

사천시시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2호 2001. 10. 10)

총무위원회
2001. 10. 22

1. 심사경과

- 가. 2001. 10. 10 사천시장 제출
- 나. 2001.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1. 10. 22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이유

행정규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일부 완화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함.

나. 주요골자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인계자가 1부씩 보관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4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성호영)

-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자치법규에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된 사항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 조례안도 이장의 경질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